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7. 17.(수) 09:3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9-35-142)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8년도 텔레비전 방송과 일반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0.37로 하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18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경과사항과 관련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방송사 소유지분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한 이후 지난 6월 말에 미디어 다양성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해 산정방법, 2018년도 매체교환율,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작년에 2017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심의·의결 시에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한 내용 대부분 방송법령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산정방법입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일간신문구독률을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합

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100%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3쪽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2018년도 매체교환율입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체교환율은 이용자 조사와 시장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데 2018년도 비율은 이용자 조사가 0.31, 시장 조사가 0.43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수치를 평균한 0.37이 매체교환율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조사는 시사정보 이용률, 이용시간, 매체의존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시장 조사는 텔레비전 방송 광고매출과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입니다. 환산대상은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4개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산 방법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앞서 보고드린 매체교환율을 곱하여 환산된 시청률을 구한 후, 이를 2018년도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환산 시청점유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환산 절차에 대해서는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절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환산한 결과, 조선일보 계열 5.408%, 중앙일보 계열 3.040%, 동아일보 계열 3.158%, 매일경제 계열 1.19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 대상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280개 방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24.982%, (주)문화방송 12.138%, (주)에스비에스 8.544%, 한국교육방송공사 2.245%로 나타났습니다만, 다음 6쪽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제이티비씨(주) 9.000%, (주)조선방송 8.357%, (주)채널에이 5.832%, (주)매일방송 4.990%, (주)와이티엔 2.380%, (주)연합뉴스티브이 2.328%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일반PP의 시청점유율은 (주)씨제이이엔엠 12.637%, (주)티캐스트 2.872%, (주)아이에이치큐 1.45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명시된 시청점유율 상한선인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본 안건이 의결되면 관련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을 사전에 심의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청점유율 산정은 신문·방송 경영 허용에 따른 여론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명시된 시청점유율 상한선 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의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등 강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상한선 30%를 초과한 사업자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청점유율 데이터를 통해 방송시장의 변화를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8년도 경우에 지상파방송3사의 시청

점유율은 2015년 53.449%에 비해 45.664%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종합편성PP의 시청점유율도 2015년 29.405%에서 2018년에는 28.179%로 소폭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 영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매체교환율입니다. TV를 1로 할 때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0.37로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미디어 다양성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청점유율 규제가 소극적 다양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을 조사하는 미디어 다양성 조사 수준을 넘어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다양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한 N스크린(N-screen) 조사의 정착이고, 다른 하나의 예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유료방송의 다양성 조사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 미디어다양성위원장님이신 허 욱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띄어서 짚겠습니다. 지금 허 욱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상파의 시청점유율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년 하락 추세가 눈에 띄는데 KBS, MBC, SBS 해마다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 중 EBS와 OBS만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고, 종편 4개사는 해마다 똑똑 이것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파보다는 하락폭이 적지만. TV조선의 경우 본인 시청점유율은 오히려 다른 종편보다는 올랐는데 합산했던 신문구독률을 포함한 시청점유율은 역시 TV조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신문구독률이 아무래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참고로 조선일보 계열의 신문구독률, 환산이 되는 신문구독률 수치가 '17년도에 6.4%였는데 '18년도는 5.4% 정도였기 때문에 대략 거기에서만 1% 정도가 빠지니까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본인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CJ ENM이 지상파 KBS 바로 다음으로 부동의 2위를 해마다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청점유율 상승폭이 큼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2위를 했고 특수관계와 지분을 합산한 최종 시청점유율은 12.637%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광고는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지난달 6월 방송매출이 CJ ENM이 다른 KBS, MBC, SBS보다도 약 2배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4개사 전체를 합친 광고보다도 약 2배 가까이 역시 방송광고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지속되는 현상이고, 이 고공행진을 한 동안 누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CJ ENM에 대한 예를 들면 공적채무 부분들에 대해 방송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국회에서도 여전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런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를 저는 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CJ ENM 같은 경우 재방송 이런 편성규제가 전혀 없지요? 여기는 이 과 관할이 아니니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방발 기금도 내지 않고 있지요?

○ 김재영 사무처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매체력도 해마다 늘어나고, 시청점유율과 방송광고의 점유율이 해마다 이렇게 치솟는데 거기에 아무런 상응하는 방송정책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올해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처장님, 검토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 김재영 사무처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이나 큰 틀의 정책은 과기정통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나 편성 측면에서 공정성, 공적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도 과기정통부에서 유료방송은 그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방송 전체의 유기적인 또 통합적인 방송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또는 불합리성이 여기에서도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관할이 과기정통부에 가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이런 방송정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아까 허 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특히 종편매체라는 방송매체가 출범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여쭙습니다. 이 관련조항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이 조항은 10년 전에 종합편성PP를 허가할 때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 즉 종합편성PP들의 1대 주주가 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둔 것입니다. 즉, 규제의 목표, 규제의 대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면서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 사업자입니까? 방송채널 410개를 운영하는 280개 방송사업자를 넣다 보니까 당초의 규제 목표, 규제 대상이 희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10년 동안 이 제도를 관행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10년 동안 30% 상한 규제대상이 된 사업자가 있었습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KBS 정도만 거의 30% 근접해 왔고, 그 외에는 30% 넘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홈쇼핑 채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독과점 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추구라는 정책목표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채널이 여기 조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청점유율 제도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집중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론과 상관도가 떨어지는 아주 신변잡기식의 연예오락 프로그램도 많이 점유하면 시청점유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을 줄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어떤 신문 지분과 연관되어 있거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작더라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장르, 가령 홈쇼핑 같은 장르가 대표적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장르나 아니면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시청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면서 제도는 운영하되,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라는 그때 당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 신문기업들이 종합편성PP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론 독과점 방지,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제도로 이 관련 규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책목표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관련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저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입장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매체교환율 측정해 보면 일간신문 영향력이 이번에도 작년에 0.37%로 나왔는데 이것이 시청점유율 전체가 떨어진 것을 보면 당연히 신문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추이가 어떤지 전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매체교환율을 조사해서 설정한 것은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매체교환율이 0.47이었습니다. 2018년도가 0.37이니까 근 10여년 만에 0.1이 떨어진 것인데, 문제는 0.1, 0.2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방송의 영향력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1로 비교했을 때 신문의 영향력, 신문의 매체교환율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방송과 신문이 공히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따지자면 방송보다는 신문의 영향력이 더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점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TV, 이것은 실제적으로 연합뉴스와 사장도 겸임이고 실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연합뉴스 쪽에서 방송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연합뉴스라는 통신 부문은 전혀 조사 대상이 아닌데 이것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문구독률, 신문유가부수를 가지고 처음에 최초 기준으로 해서 쪽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연합뉴스가 통신사다 보니까 그런 유가부수가 없는 현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통신사도 일정한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여론 지배력이 있으면서도 현재 카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그동안 방송 쪽은 N스크린 해서 최근 3, 4년 동안 검토해 왔는데 신문 쪽도 온라인 쪽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신문도 종이기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폰이나 PC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부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됐건 접속횟수가 됐건 그런 측정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연합뉴스도 아마 일반신문기사와 같이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실무적인 검토도 하고, 또 미디어에서도 논의도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연합뉴스는 실제 언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반드시 포함시켜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점유율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것은 상당 부분 다른 쪽으로 시청하는 방향이 이전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N스크린에 관한 조사는 언제 하고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N스크린 조사는 다음 주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논의를 하고, 아마 그 논의가 나온 이후에 정리되면 위원님들에게는 8월 정도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N스크린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까지 우리가 한계들을 잘 정리해서 수치와 함께 같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시청점유율 추이를 다 보기 위해 N스크린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잘 조사해 주시고, 또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3기 위원회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3기 때 제가 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했는데 유아무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시작할 때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업자들이 '광고산업 인프라, 방송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통위가 해 주어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이것은 고 위원님이 초기에 N스크린 하면서 민·관 같이 논의하실 때도 주도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아까 성과를 말씀드렸던 것이 가령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부딪혔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전용이여폰을 끼지 않으면 측정이 안 되고, 사실은 측정이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그것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아직 수치는 못 받아봤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12개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8, 9개월 정도 유튜브를 처음으로 이번에 측정해 봤습니다. 그런 유튜브가 들어왔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이 그동안 진전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님께서 결정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100%가 아니라면 그래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이제는 통합 시청률로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는 2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콘텐츠의 이용에 맞게 광고정책, 광고전략 그리고 광고단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것, 지금 조사의 기술적인 한계들을 말씀하셨지만 실은 콘텐츠, 특히 국내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에 워터마크(watermark)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기 단위에서 측정할 때 노이즈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특히 지상파사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콘텐츠 유통경로들이 다 노출되니까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주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이나 광고단체들이 주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어떤 해법을 도출할 것이냐,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결과는 매번 나오지만 그것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투입 대비 활용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 옥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미디어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방법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은 N스크린 전체의 방법론적인, 기술적인 한계의 극복을 위해 위원들 간에도 실질적으로 2개의 조사업체들, 실질적으로 실현의 방법론도 한번 점검해 보기도 했었고,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유통될 때 원래 지상파방송사가 유튜브에 프로그램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에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통로는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현실과 규범과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해서 반영하고 방법론을 수정할 것이냐 라는 제반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범조사를 했던 것이고, 올해는 유튜브까지 반영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신문을 모니터를 이용해서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볼 때 어디까지 살펴볼 것인지, 일간신문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여러 가지 인터넷 언론 등 나머지도 봐야 하는 것이냐 등등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구체화되어서 통합 시청점유율 발표의 전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활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 조금 더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내부에서 좀 더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tvN 채널 같은 경우 CJ ENM의 시청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종편을 승인해 주면서 그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문을 합쳤을 때 여론 점유율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신문의 구독률도 점점 떨어져가고, 방송의 시청률도 점점 떨어져가는 판에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연구를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은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연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관행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는 제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미 있는 결과도 우리가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아까 고삼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또는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연구해 가는 것은 상당한 돈이 들 텐데, 허 옥 위원님께서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은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스크린 연구와 이것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작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지금 신문사와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종편 전부 합쳐서 30%를 넘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년 확인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돈이 드는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연구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허 옥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담당국과 과에서도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청점유율에 큰 의미가 없고 조사의 의미가 낮은 부분들은 줄이고, 격년으로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들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17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한 5개 부처 공동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계약 절차, 제작비 지급, 수익배분 등을 규제함으로써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7년 12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학계·법률 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TF를 구성하였고, '18년 3월~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7년도 외주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서 '18년 12월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8년 11월부터 '19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해서 방송사와 외주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17년~'18년도에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관행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거래 과정상의 불공정 이슈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첫째, 서면계약 체결 등 거래의 기본원칙 확립을 유도하고, 둘째 제작비 산정기준 등 제공 정보를 명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방송사·외주사의 자율적인 외주제작 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칙입니다. 가이드라인 목적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호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의 구성 및 방식입니다.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적어 서면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조건으로 이용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중지일·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표준계약서상의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지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상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작비 산정 및 지급입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주사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영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 800억 원 이상이면서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로 적용을 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KBS, MBC, SBS, EBS, TV조선, 채널A, JTBC, MBN, 그리고 CJ ENM과 MBC PLUS 등 총

10개사가 올해는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기간 증감 시에 방송사는 외주사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시점에 제작이 완성된 부분 그리고 미완성 시에는 제작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저작권 및 수익배분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이때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배분 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생을 위한 노력입니다. 방송사는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주제작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항도 영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800억 원 이상이면서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로 적용을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10월 말까지 부여한 이후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 라인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2017년 12월 19일에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매분기 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또 개선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5개 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검반장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외주와 관련된 종합대책은 지난 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것이 외주정책 시행 30년 만에 처음 있는 대책 발표였습니다. 그만큼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그리고 외주제작 스태프들의 인권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가장 눈부신 성과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류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방송산업, 콘텐츠산업의 가장 눈부신 성과라고 평가 합니다. 반면에 화려한 성과 이면에 그들도 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그리고 제작현장에서의 스태프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질적 향상 그리고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들을 걷어내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5개 부처가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사무처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시행했던 성과들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방통위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식, 그리고

방송평가를 통해 방송사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의무, 그리고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희가 편성고시를 개정해서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을 개정해서 부당 감액과 같은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등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문화부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서 계약서 미작성이나 구두계약의 경우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처들 간 협업을 통해 현장 방송 제작 환경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인식 제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보고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은 앞서 말씀드린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거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제작비 산정기준을 사업자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중요한 저작권 배분 원칙들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이드라인이지만 향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등 주요한 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을 통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경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관련부처 협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과 또 사무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가 방송법상에는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주사와 방송사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외주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공정한 거래관행, 아니면 방송 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규제 대상인 방송사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해 그간 피해를 입었던 외주사 간 이해조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100%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자유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의 의미도 상당히 큼니다만 여기 보면 제4장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 이것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의 귀속 및 양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예를 들어 저작권을 어떻게 소유하고 배분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부나 문화부에 의견을 낸 외주제작사 단체들의 요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 외주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개정이 안 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외주제작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또 외주제작업체와의 계약 부분들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외주제작업체들 그리고 스태프들의 권리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텐데 실제로 시행되다 보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와 현장에서 적용할 때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열린 자세로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수렴해 주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여기까지 작업을 끌어주시고 또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17년 12월에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 문제를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1년 반을 끌어온 작업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였고, 특히 현장 점검반장으로서 활동해 주신 고삼석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아마 저작권과 수익배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쾌하게 선을 긋는 이런 명시적인 문항들은 답을 수 없었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특히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부분, 창작의 개념과 정의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도 사업자와 외주사 간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는 못 했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작권법에 있는 창작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상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발표했는데 그 사용지침에 따르면 창작의 개념은 기획과 개발과 제작 이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준비단계를 이야기하고 개발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획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스태프들을 고용할 것인지, 제작·촬영하기 전 단계 스태프의 고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작 과정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작을 기획·개발·제작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주프로그램의 제작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동제작이 있을 수 있고, 완전 외주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분 외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 창작의 개념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여기에서부터 창작이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저작권법에 있는 개념을 다시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에 담았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여부는 협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결정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협의를 거치고 합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몇 대 몇으로 할지, 수익배분 문제와 또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외주사 쪽은 실제로 직접 촬영에 들어간 부분부터 창작의 개념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자는 쪽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스튜디오, 편집실, 편집기계를 아무래도 방송사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그것을 활용·이용한 부분부터도 이것은 저작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잘 조율되기 어려워 아마 충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되게끔 우리도 주선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요내용을 오늘 보고받아 보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제가 꼼꼼하게 가이드라인 전문을 다 읽어봐야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열악한 제작환경입니다. 대부분 외주사의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비정규직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 52시간 적용 문제, 또 초과수당 지급 문제 등 이런 처우에 관한, 또 부당한 차별 부분에 대한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들이 혹시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담겨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해서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 보면 외주제작 현장에서의 방송스태프들을 근로자성은 인정했고, 사용자를 외주사 또는 도급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에서 보면 저희가 방송사에게 이런 사용자성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외주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제작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방송사업자가 매년 마련해서 외주제작 계약을 할 때 외주사에게 제시를 해서 합리적인 제작비가 산정되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산정할 때 방송사가 만들어 놓은 표준제작비의 기준과 외주사가 요청하는 제작비는 간격이 클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외주제작사에게 합리적으로 어떤 제작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호합의를 통해 제작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스태프들의 근로환경 52시간도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외주사는 299인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68시간이 적용되고, 299인 미만 그리고 50인 이상인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68시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68시간은 준수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정당하게 근로계약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받느냐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작비를 산정하게 해서 그 제작비로 외주사가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런 부분들 숙제로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사에게 외주사를 참여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상생협의체에서 근로환경 개선 부분도 논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어떤 관행을 깨뜨린다는 것이 원래 저항이 많습니다. 특히 큰 방송사업자들은 슈퍼갑인데 이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만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까지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이것을 쪽 같이 해 온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편법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이 생기면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우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되는 과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면밀하게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제4기 방통위의 비전이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추진'입니다. 그리고 제4기 방통위 출범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고(故) 박환성·김광일 PD 해외 촬영 중 사망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아주 해묵은 갈등 이슈였는데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동규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봅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작업을 잘 수행해 준 담당 과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 노고에 저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91년에 외주제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외주제작사들은 그동안 외주제작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횡을 행사하는 착취적 구조로까지 표현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주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이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의견수렴 했던 초안보다는 후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은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방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걸음이나마 진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초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사들이 참여를 거부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주제작사들이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했던 이유, 그리고 현재 외주제작사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작년 말에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공청회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불참 통보하면서 공식 성명서도 제출했는데, 기본적으로 제작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제작비를 공표하도록 각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런 문제가 영업의 자유원칙을 훼손한다는 부분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의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외주제작사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주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방송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참여를 원하는 안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안)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협회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협상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협상력 차원에서 열위에 있는 외주사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어떤 내용들인지 이해하고 중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노력들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개별 계약에 있어서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계약 체결은 물론 계약의 변경·해지를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저작권과 수익배분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제작비의 산정기준, 수익배분의 근거자료 제공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약자유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고려해서 상생협업체 운영을 명문화해 방송사와 개별 외주제작사 간의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간략히 보면 첫째는 계약체결 때 표준계약서 활용 노력의 권고는 현행 문화부 권장 표준계약서가 가진 문제점에 더해서 행위 규제 정도를 노력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실효적 규범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납품편수나 제작기간이 증감될 경우 방송사업자가 일정 기간 전에 고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고지가 아니어서 현행과 같이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작을 중단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저작권과 수익배분 원칙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도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협찬수익 배분에 대해 합의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협찬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작자의 저작권 외에 방송사의 투자 자본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비용도

충분히 고려가 될 사안들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의 광고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입니다. 드라마 제작 시 적자가 심해서 드라마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될 상생협의체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생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정책 목표의 현실 적합성, 즉 이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주제작의 문제점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즉 갑과 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문제제기했듯이 을과 을, 을과 병, 을과 정 사이에서도, 즉 외주제작사 내부의 하청과 재하청 구조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공정 거래와 관행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읽어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방송 제작 환경, 외주제작사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5장에 상생을 위한 노력 등에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도 '인권보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1일 시행되기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가이드라인(안) 자체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상파 3사와 언론노조 간 산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별협약을 체결해서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그것에 따라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협의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방송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부분, 그리고 표준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2가지에 대해 방송사와 외주사가 합의했습니다. 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사, 외주사 그리고 방송 스태프노조, 언론노조 이렇게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9월까지 표준임금 근로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상생협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끌어낼 수 있을까, 운영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사업자가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금 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외주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담을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외주제작 스태프들의 인권 문제는 또 다른 논의를 많이 했고 그 성과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5개 부처가 소관업무별로 해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표준계약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부분들은 문화부에서 결정해서 또 시행하고 감독하는 그 원칙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면 그것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자 들끼리 자율 협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들은 그 부분들대로 지금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각 기관별로 그리고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역할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곧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시고 이해관계자들 만나고 사업자들 만나서 많은 의견청취를 하셨고, 또 서로 간 불만이 있는 것들은 조율해 주셨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 분야의 갑을관계 청산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끊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리고 종편 PP사업자, 또 유료방송의 대형 방송사업자들이 또 한 발짝 양보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평가할 것은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외주제작사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들도 아주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차분하게 개선되는 것들에 대해 기다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되겠지만 그동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의지, 노력 이러한 것들을 신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들 외주제작사들 그리고 제작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를 믿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의견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기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에서의 갑을관계, 또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방송계에서의 상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저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점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상당한 진통 끝에 가이드라인이라는 해소책이 탄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생시키고 위원님 그리고 담당자들의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전문가 그리고 방송사, 외주제작사 관계자들, 또 과거 정통부나 문체부 관계부처 의견을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에 모든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의견들이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력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특성상 향후 이행을 독려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외주제작사 등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구두계약이 통용되는 외주제작 현장에서 촬영 시작 전에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것이나 계약 해지 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표준제작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사에서 제공토록 한 것 등은 큰 성과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제작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과 상생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이 조성되어서 양질의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부터 현장에 안착하여 제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작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각오로 시작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방송제작사, 제작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회자되는 소위 위라벨, 일과 삶의 질을 잘 조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까지나 방송산업이 방송 제작진의 희생에 기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축적이 안 되고, 또 젊은 열정을 가지고 제작 현장에 참여했다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고 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에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인력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점적인 추진사업이 이미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는 말을 듣고 있고, 또 제작 현장에서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빛미디어 이사장님을 뵈는데 자기가 제작 현장에 나가면 스태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기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느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서 문체부 또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뿌듯했습니다. 고삼석 위원님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고 저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4기 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고(故)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이 있었고, 그 조문을 하면서 부터 이 일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현장, 또 많은 담당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 탄생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방송환경이 개선되면 더 좋은 가이드라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가이드라인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는 상황을 지향하는 가이드라인이 탄생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송 제작 환경이 나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금자탑에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7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3분 폐회 】